

●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-33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"정기 및 준공
검사 시정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"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05일

청주전파관리소장

정기 및 준공검사 시정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

1. 근 거 법 령: 전파법 제72조제2항(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)
2. 법령위반사항: 정기 및 준공검사 시정기한 경과
3. 내 용: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알림
4. 청 문 일 자: 2024.1.12.(금) 16시
5. 주 소: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(043-261-5837)
6. 대상 무선국

허 가 번 호	시 설 자 명	주 소
92-2023-55-0000009	김○만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

7. 유의사항

가.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나.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다.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라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